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85 발의연월일 : 2023. 4. 24.

발 의 자:도종환·김철민·서동용

권칠승 • 안민석 • 유정주

민형배 · 서영석 · 강득구

박 정・인재근・김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긴급보호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과 해당 학교가 이러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송 참가 등 관련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사항 통보)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학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	
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	
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	,
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	
호, 제2호 및 제6호의 <u>조치를</u>	<u>어느 하나에 해</u>
할 수 있다.	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1. ~ 6. (생 략) ② ~ ⑧ (생 략) <u><신 설></u>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사항 통보) 교육장은 제17 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